

CARE 법

공동체 지원, 회복, 강화법

자격 기준

CARE 법은 조현병 및 기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주거 자원, 기타 서비스 등 자발적인 CARE 협약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CARE 보험을 만들기 위해 특정 성인이 민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자격 기준

-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기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의 사람.
-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즉, 개인의 돌봄과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치료, 지원, 재활 없이 안정적인 적응과 독립적인 기능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지속적인 자발적 외래진료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
- 감독 없이 필요한 개인 안전, 위생, 식단, 건강,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으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거나, **또는**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
- CARE 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제한이 적은 선택이어야 하며, **그리고**
- CARE 보험 또는 CARE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CARE 법 자격 진단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현양상장애, 기타 지정된 조현병 스펙트럼, 지정된 기타 정신과적 장애, 지정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지정되지 않은 기타 정신과적 장애.

기타 정신과적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간단한 정신질환, 망상장애, 정신분열성 인격장애, 약물치료로 인한 정신질환, 또 다른 정신장애와 연관된 긴장증, 불특정 긴장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신과 진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질환으로 인한 정신과적 장애
- 다른 질병과 관련된 긴장증
- 정신과적 특징을 가진 주요 우울증
- 정신과적 특징을 가진 조울증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물질 관련 장애

* 위에 명시된 다른 진단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조현병 및 관련 질환은 무엇인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진단 및 통계 편람(DSM-5TR)®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자격증이 있는 의료 전문가가 진단하는 정신 질환으로서, 다음 영역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증상으로 정의된다.

- 망상
- 환각
- 무질서한 사고
- 극도로 무질서하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행동
- 부정적인 증상 - 무더진 감정, 무관심, 판단력 손상, 기본적인 과제 완수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

조현병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소 6개월의 기간을 가져야 하며, 다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장애:

기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과 동일한 특징 중 일부를 공유하지만 해당 진단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질환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캘리포니아주 법제사법위원회 CARE 법 웹사이트](#)

[CARE 법 보고문\(2023년 3월\)](#)

[CARE 법 용어집](#)

CARE 법 자격 기준

복지 및 공공시설법 제5972조

다음 사항이 모두 사실인 경우에만 개인은 CARE 법 절차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

(a) 18세 이상이다.

(b) 제5600.3조 (b)항의 (2)에 규정된 심각한 정신 질환을 현재 겪고 있으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최신 버전에 정의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과적 장애 등급으로 확인된 진단을 두고 있다. 본 조는 외상성 뇌 손상, 자폐증, 치매, 신경학적 상태와 같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포함하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질적으로 주로 정신과적이 아닌 정신질환을 기반으로 한 피신청인 자격을 수립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및 안전법 제1374.72조의 제(a)항의 (2)에 규정된 물질 사용 장애의 진단이 있지만 본 조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CARE 법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

(c) 지속적인 자발적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

(d)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

(1)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낮고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2) 제51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심각한 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재발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

(e) CARE 보험이나 CARE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회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선택이다.

(f) CARE 보험 또는 CARE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